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5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전 문

원고A단체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변론 종결2022. 7. 8.

판결 선고2022. 8. 19.

주 문

1. S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0. 8. 접수 제428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2. 8. 접수 제530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9. 1. 22. 접수 제28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D는 84/1,064 지분, 피고 E, F, G, H, I, J, K는 각 56/1,064 지분, 피고 L은 24/1,064 지분, 피고 M, N은 각 16/1,064 지분, 피고 O, P, Q, R는 각 133/1,064 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S에 대한 채권

이 법원은 2017. 3. 8. "S는 원고에게 144,256,581원 및 그 중 41,296,28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2017차전112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나. S의 무자력

S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B는 1998. 10. 7. S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8. 접수 제428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를 마쳤다.

2) C는 1998. 12. 7. S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12. 8. 접수 제530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를 마쳤다.

3) T, U는 1999. 1. 21. S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22. 접수 제28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를 마쳤다.

라. T, U의 상속관계

1) T이 2017. 11. 19.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D 등이 T을 상속하였다.

D	배우자	84/1,064	2014. 7. 8. 사망한 자녀 V의 대습상속인들
E	자녀	56/1,064	
F	자녀	56/1,064	
G	자녀	56/1,064	
H	자녀	56/1,064	
I	자녀	56/1,064	
J	자녀	56/1,064	
K	자녀	56/1,064	
L	사위	24/1,064	
M	손자	16/1,064	
N	손자	16/1,064	

2) U가 2012. 1. 31.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O 등이 U를 상속하였다.

O	자녀	133/1,064
P	자녀	133/1,064
Q	자녀	133/1,064
R	자녀	133/1,06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 S의 채권자인 원고는 S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계약체결일로서 채권성립일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1998. 10. 7.부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1998. 12. 7.부터,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1999. 1. 2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채권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S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주문 기재 각 피고들 해당 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S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S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수웅

별지